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들어가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상 질병 재해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재해자 23,331명 중 약 32.6%인 7,596명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재해자였고, 약 22.3%인 5,204명이 요통 재해자였다. 근골격계 질환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를 일상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¹⁾

사업주는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

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²⁾ 제 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하는 경우에 노동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³⁾ 또한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시행 2024.1.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6.27. 일부개정]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 방법 등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노동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노동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하는 경우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노동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㉞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